

## 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이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산림조합(이하 “조합”이라 합니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합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임업자금,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 및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등의 가계용 여신과 관련된 조합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등 조합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하거나, 배서<sup>주)</sup>·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조합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배서 : 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하 “배서”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등”이라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핵심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자등의 율은 거래계약을 할 때에 다음의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조합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진 때에는 조합은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부합 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등의 율에 관한 조합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조합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계·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조합이 이자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조합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조합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을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등의 율과 관련하여 조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4조(비용의 부담 및 설명의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sup>주)</sup>에 대한 조합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주) 물상보증인 :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물상보증인”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조합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할 때에는 조합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자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자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③ 조합은 대출계약의 중요내용을 핵심설명서에 반영합니다.

④ 조합은 대출상담 및 대출실행 시 각각 핵심설명서 2부에 채무자가 여신거래의 중요사항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1부는 채무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조합이 보관합니다.

#### 제4조의2(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등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협약대출(단, 조합이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8조 제4항 및 지상권설정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④ 조합은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 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조합은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조합을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제5조(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을 할 때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조합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합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제6조(담보)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기한이익이란 미리 정한 기한 동안 채무자가 누리는 이익을 말하며, 이하 “기한이익”도 내용은 동일합니다)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조합이 채무자를 위하여 유리하게 적용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모든 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 재산(제1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을 때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해당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완전히 지난 날에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조합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조합은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거나,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조합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 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sup>주)</sup>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정보로 등록된 때

주) 대위변제 :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

주) 대지급 : 채무자가 기일 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 등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조합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조합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조합에 대해 해당 채무 전부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조합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 주택의 담보 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조합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조합에 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조합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조합이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성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조합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 됩니다.

#### 제8조(기한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조합은 동조 동항 제1호·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동조 동항 제2호·제3호·제5호·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를 조합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연대보증인 등”이라 합니다)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7조 제3항·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 등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 등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조합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 등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조합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등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9조(기한전의 임의 상황)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0조(조합으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조합은 채무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조합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모든 예치금 등”이라 합니다)과를 상계 할 경우, 조합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모든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모든 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조합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조합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예금 등의 이자율은 해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조합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조합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조합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조합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 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조합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조합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조합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조합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조합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 할 수 있습니다.

④ 조합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일부변제·일부상계와 충당)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조합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조합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의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모든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조합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조합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조합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는, 조합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권보전상 알맞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 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사과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조합에 제출한 여러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조합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자는 조합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조합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조합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조합의 요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 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조합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조합이 어음이나 여러 증서·신고서 등 서류의 도장을 찍은 모양·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주소·전화번호·인감·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6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17조(통지의 효력)

- ① 조합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5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늦게 도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요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조합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18조(회보와 조사)

- ① 채무자는 조합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주며, 또 조합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조합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조합 앞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9조(이행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조합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조합의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으로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할을 옮겨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 제20조(약관·부속약관 변경)

- ① 조합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조합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조합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조합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③ 조합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조합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21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조합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조합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조합이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 관할을 옮겨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조합, 중앙회 등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